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6. 7.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범위를 공원입장료 면제, 문화행사 초대권 배부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 실현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기위하여 관련조항 삭제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 삭제
 1. 공원입장료 면제
 2. 문화행사 초대권 배부
 3. 교양강좌 , 간담회 등 우선 초대
 4. 기타 자원봉사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책 등

3. 참고사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2006. 3 행정자치부)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행정자치부 표준안)
 - 도 새마을봉사과 - 2361('06.4.28)호와 관련임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 18조 내지 안 제24조”를
“안 제17조 내지 안 제23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제17조(자원봉사자의 지원) (생략)</u> 1. <u>공원입장료 면제</u> 2. <u>문화행사 초대권 배부</u> 3. <u>교양강좌, 간담회 등 우선 초대</u> 4. <u>기타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u> <u>시책 등</u>	(삭 제)
<u>제18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u> <u>제19조(포상)</u> <u>제20조(경력인정 등)</u> <u>제21조(보험가입)</u> <u>제22조(실비지급)</u> <u>제23조(개인 정보의 보호)</u> <u>제24조(시행규칙)</u>	<u>제17조(원안과 같음)</u> <u>제18조(원안과 같음)</u> <u>제19조(원안과 같음)</u> <u>제20조(원안과 같음)</u> <u>제21조(원안과 같음)</u> <u>제22조(원안과 같음)</u> <u>제23조(원안과 같음)</u>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6조(구성 및 운영) ①제5조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나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가진 위원이 변경될 시 그 직위와 보직을 받을 경우 위원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 ①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 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2. 공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 ⑥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⑦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제10조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2조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시장, 센터장, 비영리민간단체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경력 인정 등) 구미시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실비 지급) 시장,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개인 정보의 보호) 자원봉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시킬 수 없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